

# 사회적 형평성의 정의론적 논거 모색: ‘응분의 몫(desert)’ 개념을 중심으로

임 의 영\*

<目 次>

- I. 서론
- II. 일반적 정의 개념의 근간으로서 응분의 몫
- III. 정의 원리로서 응분의 몫
- IV. 쟁점들
- V. 응분의 몫과 형평성, 그리고 행정적 함의
- VI. 결론

<요 약>

행정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이념으로서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약하다. 신행정학이 등장하던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반까지 Rawls의 정의론에 의존해서 사회적 형평성의 정의론적 근거를 제시한 것 말고는 이렇다 할 이론적 논의가 전개되지 않았다. 사회적 형평성은 정의론 자체를 의미하기 보다는 하나의 정의원칙이 현실에 융통성 있게 적용되도록 하는 조절이념이거나 다양한 정의원칙들을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나 다양한 원칙들이 바람직하게 배합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조절이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형평성은 하나의 정의이론에 의존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정의이론이 형평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Rawls가 포함되어 있는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진영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론적 논쟁에 주목하였고, 그 가운데에서도 ‘응분의 몫(desert)’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글에서는 응분의 몫을 우선 일반적인 정의 개념의 근간으로서 다루었다. 그것은 제몫을 갖는 것, 동일한 경우는 동일하게 다루는 것과 같은 정의관념을 구성한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정의원칙들과 경쟁하는 하나의 정의원리로 다루었다. 기본 모형은 “P(주체)가 B(응분의 몫의 근거) 때문에 당연히 T(응분의 몫)를 가질 만하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두 차원에서 응분의 몫 개념을 정리하고, 다양한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응분의 몫 개념이 사회적 형평성과 어떠한 연관이 있으며, 행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론적 함의를 갖는지를 살펴보았다.

【주제어: 사회적 형평성, 응분의 몫, 정의, 행정이념】

\*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eylim@kangwon.ac.kr)

논문접수일(2008.4.16), 수정일(2008.6.9), 게재확정일(2008.6.18)

## I. 서론

1960년대 말부터 사회적 형평성은 행정의 핵심 이념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사회적 형평성 개념 자체가 정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학자들은 정치철학적 차원에서 정의론에 주목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미국인의 정신성에 친숙하지 않은 평등의 관념을 체계화하고자 한 Rawls(1971)의 정의론에 많이 의존하였다(Harmon, 1974; Hart, 1974; Frederickson, 1980). 따라서 행정학계에서 사회적 형평성은 곧 Rawls의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를 의미하는 것이 되었다. 사회적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을 제공하는 차등원리(difference principle)는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행정의 이념이 되었다. 어떤 학문공동체가 하나의 개념에 대해 의미를 규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다른 학문공동체와의 호환성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학문적 보편성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행정학계의 규정은 다른 학계, 대표적으로 정치학과 호환성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회적 형평성이 의존하고 있는 정의론은 Rawls의 정의론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학계의 사회적 형평성 개념이 학문적인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의론들에 대한 이론적 이해가 필요하다 하겠다.

형평성은 첫째로, 정의원칙의 유연한 적용을 추구한다. 정의와 형평은 일면 동일한 것 같기도 하지만 또한 다른 개념이기도 하다. 정의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가치와 부담 및 권리와 의무를 분배하는 하나의 원리를 정립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형평성은 그러한 원리를 현실 속에서 적절하게 적용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형평성은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경직된 태도에서 벗어나 현실적합성을 추구하는 유연한 태도를 요구한다. 둘째로, 형평성은 정의원칙의 다의성, 상대성, 경쟁성을 배경으로 한다. 형평성은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가령 정의원칙은 평등에 따른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 능력에 따른 분배, 수행(노력)에 따른 분배, 성취에 따른 분배, 권리에 따른 분배, 응분의 몫에 따른 분배 등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정의는 이처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어떤 원칙이 다른 원칙에 비해 적절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각각의 원칙은 서로 보완적이기도 하고 경쟁적이기도 하다. 형평성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조화를 이루기에 가장 합당한 원칙의 선택이나 배합을 추구하는 이념이다. 따라서 형평성은 어느 하나의 정의원리로 정당화될 수 있는 이념이 아니다. 셋째로, 형평성은 정치철학의 전통적인 쟁점이었던 자유와 평등의 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사회적 형평성은 사회구성원의 동등한 자유와 합당한 평등/불평을 축으로 한다. 모든 개인은 서로 동등한 자유를 향유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평등하며, 분배는 합당한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형평성은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이념이기도 하다(Perelman, 1963; 차하순, 1983). 이상의 세 가지 지적을 통해서 볼 때, 행정학계의 사회적 형평성 개념은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다. 행정학계에서는 Rawls의 정의론에 기초해서 사회적 형평성을 논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논의가 전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은 사회적 형평성을 보다 보편적 개념으로 이론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자유와 평등의 관계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평등주의(liberal egalitarianism) 진영 내에서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응분의 몫(desert)’<sup>1)</sup>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응분의 몫은 실제로 행정현장에서 그리고 행정이론의 전제로서 많은 부문에서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학 분야에서 이론화되지 않았다. Rawls(1971)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Nozick(1974)의 자격권리(entitlement), Walzer(1983)의 복합평등(complex equality), Dworkin(2002)의 자원평등(equality of resources) 등의 개념은 사회적 형평성과 관련해서 논의된 바 있으나(임의영, 1994; 2003; 2007), ‘응분의 몫’ 개념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응분의 몫 개념이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진영 내에서 관심을 받게 된 것은 분배적 정의와 관련해서 책임(responsibility)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책임과 분배의 몫을 상응시키는 것이 정의론적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Olsaretti, 2003: 2-3). 그 과정에서 응분의 몫이 ‘논쟁적’ 개념으로 부각되었다. ‘응분의 몫’은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하나는 일반적인 정의 관념의 근간으로서 응분의 몫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몫’을 갖게 하는 것이 정의롭다는 생각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관념은 추상적이지만 정의감(sense of justice)을 자극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른 하나는 응분의 몫을 다양한 정의 원리들과 경쟁하는 또 하나의 정의원리로서 이해하는 것이다. 응분의 몫 개념 역시 하나의 분배원리로 정립되고 있으며, 그것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글은 응분의 몫 개념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그것이 사회적 형평성에 대해 갖는 의미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추상적인 수준에서 정의 관념의 근간으로서 응분의 몫의 의미(II장)와, 다양한 정의원칙들과 경쟁하는 또 하나의 구체적인 정의원칙으로서 응분의 몫의 원리(III장)를 살펴보고자 한다. 응분의 몫 개념은 매우 논쟁적이다. 따라서 다음으로는 응분의 몫과 관련된 핵심적인 쟁점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IV장). 마지막으로는 이

1) 이 말과 상응하는 한국어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응분의 몫’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간혹 ‘공과(功過)’로 번역하여 쓰기도 한다.

러한 논의를 기초로 응분의 몫이 사회적 형평성에 대해 갖는 의미와 그것이 갖는 행정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V장).

## II. 일반적 정의 관념의 근간으로서 응분의 몫<sup>2)</sup>

일반적인 정의 관념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하나는 ‘제 몫을 갖는 것’이다(Platon, 1997). 다른 하나는 ‘똑같은 경우는 똑같이 다루는 것(Höffe, 2004: 12)’ 혹은 ‘동일한 범주의 존재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다루어지는 것(Perelman, 1963: 16)’이다. ‘제 몫을 갖는 것’과 ‘동일한 경우는 동일하게 다루는 것’이라는 일반적인 정의 관념은 ‘응분의 몫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제 몫을 동등하게 혹은 다르게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응분의 몫 관념 자체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응분의 몫 개념은 형식적이며 추상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정의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응분의 몫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된다(Hospers, 1961; Campbell, 1974; Sterba, 1986; Cupit, 1996).

이 장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정의 관념의 근간으로서 응분의 몫 개념이 고대부터 근대의 정치사상적 맥락에서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고대의 Homer시대에는 행동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 응분의 몫이 주어진다. 관념이 지배하였다(Adkins, 1960: 35). Platon(1997: 288-289)을 통해서 응분의 몫은 ‘제 것을 소유하는 것과 제 일을 하는 것’, ‘자신에게 맞는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보다 포괄적이며 추상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sup>3)</sup> 그리고 동등한 사

2) ‘응분의 몫’을 의미하는 영어단어 *desert*는 라틴어 *déservīre*를 어원으로 한다. *déservīre*는 영어의 *to*를 뜻하는 *dé*와 *serve*를 뜻하는 *servīre*가 결합된 단어로서 ‘봉사하는 것(to serve)’을 의미한다. 이 말은 ‘가질만한 가치가 있다(be worthy to have)’를 의미하는 고대불어 *deservīr*를 거쳐, 1250-1300년 사이에 ‘응분의 보상이나 벌(suitable reward or punishment)’을 의미하는 중세영어 *deserven*으로 발전하였으며, 현대영어에서는 ‘행동, 특성, 혹은 상황을 근거로 보상, 지원, 벌 등등에 대한 요구를 할만하다, 혹은 요구할 자격이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Based on the Random House Unabridged Dictionary, © Random House, Inc. 2006; [http://www.etymonline.com/index.php?search=desert &searchmode=none](http://www.etymonline.com/index.php?search=desert&searchmode=none)).

3) Platon은 『국가론』에서 영혼론에 의해 확정된 명제를 근거로 정의론을 전개한다. 인간의 영혼은 평등하지 않고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인간영혼의 차이는 사회적 신분의 차이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영혼은 이성, 의지, 욕망으로 나뉜다. 그리고 이성의 덕은 지혜이고, 의지의 덕은 용기이고, 욕망의 덕은 절제이다. 이 세가지 덕이 조화를 이룰 때 정의의 덕이 발생한다. 국가 역시 이러한 영혼의 상태에 상응하여 세 계급으로 나뉘고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정의가 실현된다. 이성에 해당하는 통치 계급(철학자, 왕), 의지에 해당하는 수호계급(군인과 경찰), 그리고 욕망에 해당하는 생산 계급(농민, 수공업자, 임금노동자)이 각기 구분되어 스스로의 의무에 충실할 때, 즉

람들은 평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사람은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옳바르며, 정의는 비례라고 주장한 Aristoteles(1953: 112-113; 1932: 211)를 통해서 응분의 몫은 상대적/비교적 의미를 갖게 된다.

서구의 중세에는 기독교적인 권선징악의 원리가 응분의 몫 개념의 중심에 자리하게 된다.<sup>4)</sup> 가령 자기가 행한 대로 대가를 치른다든가(오바드야서, 1:15; 로마서, 2:6), 뿌린 대로 혹은 뿌린 것을 거두어들이게 된다(코린토Ⅱ, 9:6; 갈라티아서 6:7)는 등 응분의 몫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표현들을 기독교 성서의 여러 곳에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선한 포도밭 주인(마태오, 20:1-16)’에 관한 비유는 응분의 몫에 대한 고민을 자극하고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비유에 따르면, 아침부터 일을 한 사람과 오후 늦게 잠깐 일을 한 사람에게 동일한 임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비유는 응분의 몫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자극하고 있으며, 성서적 응분의 몫에 대한 표현의 일관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대표적인 예로 인용되고 있다. 어찌되었건 기독교적 전통에서는 응분의 몫이 응보(retribution)의 관념으로 해석되고 있다.

근대에 이르게 되면, 분배와 관련해서 다양한 입장들이 나타나게 된다. 단순 화시키면, 개인의 사적 소유를 핵심으로 하는 자유주의적인 전통과 공동소유를 지향하는 사회주의적 전통으로 양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양자는 응분의 기준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추상적인 차원에서 응분의 몫이 분배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동일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자유주의 전통에서 응분의 몫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Smith(1976: 67)는 감정상태(sentiments)에 근거해서 응분의 몫 관념을 표현한다. 감사(gratitude)를 받기에 마땅한 것은 보상을 받고, 분노(resentment)를 사기에 마땅한 것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전자를 좋은 응분의 몫(merit=good desert)이라 하고, 후자를 나쁜 응분의 몫(demerit=ill desert)이라 부른다. Smith의 주장은 이후에 Sidgwick(1981: 279)에 의해 보편적인 원리로 재구성된다. 선한 행위는 보답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보편화된 감사(Gratitude universalized)의 관념’을 표현하는 것이고, 악한 행위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생각은 ‘보편화된 분노(Resentment universalized)의 관념’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자유이념을 체계화한 Mill은 ‘각각의 사람이 마땅히 가질 자격이 있는 것을 획득하는 것(1951: 54)’이 정의로운 것이라 생각하고, ‘동등하게 응분의 몫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동등하게 잘 대우’하는 것이 ‘분배적 정의의 가장 고차원적인 추상적

---

‘자기에게 맞는 일을 적절하게 수행할 때’ 정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4) 응분의 몫 관념은 동양사상이나 기독교 이외의 다양한 종교에서도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이 글에서의 정치사상사적 고찰은 논의의 일관성을 견지하기 위해 서구사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기준'이라고 주장한다(76-77). 사회주의적 전통에서도 역시 정의 관념은 응분의 몫 개념에 기초한다. Marx의 자본주의 비판의 초점은 '제 몫을 갖지 못하는 것'에 맞추어지고 있다. Marx의 소외(alienation) 개념은 '자기가 만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비판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람들이 자신이 생산한 생산물에 대해 생소한 대상으로 관계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자본주의 정치경제학에 대립각을 세운다. 따라서 그는 자본주의체제의 왜곡된 분배원칙을 한마디로 축약한다. "노동자가 대상들을 더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그는 더욱 더 적게 소유하게 된다(Marx, 1967: 289)." 이처럼 근대의 응분의 몫 개념은 좌우를 막론하고 Mill이 말한 것처럼 고차원적인 추상적 기준으로서 일반적인 정의 관념으로 수용된다.

고대에서 중세 그리고 근대에 이르는 일반적 정의 관념은 응분의 몫을 부여하는 것으로 압축된다. '제 것을 갖는 것' 그리고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이 정의 관념의 근간을 이룬다. 그리고 그것은 '응분의 몫을 갖는 것'으로 압축해서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응분의 몫 관념은 일반적인 정의 관념의 근간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응분의 몫은 형식적이며 추상적인 관념이다. 최근에 정의론 분야에서 응분의 몫이 분배원리로서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Pojman & McLeod(ed.), 1999; Olsaretti(ed.), 2003). 이러한 논쟁에서 제시되고 있는 응분의 몫 개념은 상대적으로 협의적이며 구체적이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일반적 정의 관념과는 다른 차원, 즉 다양한 정의원리들과 경쟁하는 또 하나의 정의원리로서 응분의 몫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 Ⅲ. 정의 원리로서 응분의 몫

정의 원리로서 응분의 몫은 현대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정의론자들 사이에 '책임'의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을 배경으로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다.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발생한 불평등은 보정해주고,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이유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은 그대로 인정하는 논리가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논쟁점이 되고 있다. 응분의 몫 이론은 이러한 논쟁에 참여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다양한 정의론들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적 분위기에서 보다 구체화되고 있는 응분의 몫 이론은 앞 장에서 살펴본 정의 관념의 근간으로서 응분의 몫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이제 하나의 정의 원리로서 응분의 몫 개념을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Feinberg(1970)의 응분의 몫 개념이 전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는 응분의 몫의 기본 모형을 “P는 B 때문에 당연히 T를 가질만하다”로 형식화한다. 이 언명에 따르면, 응분의 몫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 번째 요소는 응분의 몫의 주체(P)이다. 주체 요소와 관련해서 주요한 문제는 사람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마땅히 가질만하다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인을 구한 강아지는 칭찬받아 마땅하다든가, 설악산이 아름다우니 돈을 들여 보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표현을 일상적으로 쉽게 말하고 듣는다. Feinberg는 정의론의 맥락에서는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분배가 초점이기 때문에 주체를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두 번째 요소는 응분의 몫을 주장하는 근거(desert-base: B)이다. 근거가 되기 위한 일차적인 조건은 제시된 근거가 주체 자신의 것이어야 한다. 가령 시험 성적을 부여하는데 학생의 시험결과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학부모의 즐거움을 위해 성적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Feinberg에 의하면, 응분의 몫의 근거는 속성(quality), 자격(qualification), 행동(behavior)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속성은 주체의 좋음이나 나쁨을 의미한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관념과 관련된다. 자격은 적합성(fittingness)을 의미한다. 가령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채용과 관련된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행동은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 옳은 행동과 그른 행동, 그리고 적합한 행동과 부적합한 행동 등으로 분류된다. 세 번째 요소는 응분의 대우(desert treatment: T)이다. Feinberg(1970: 62)는 응분의 대우 유형을 상의 수여(awards of prizes), 등급 부여(assignments of grades), 보상과 벌(rewards and punishment), 칭찬·비난·기타 비공식적 반응들(praise, blame, and other informal responses), 그리고 배상·책임부담·기타 형태의 변상들(reparation, liability, and other modes of compensation)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응분의 대우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범주화될 수 있다. 하나는 양극적(polar)이며, 다른 하나는 비양극적(nonpolar)이다. 상이나 등급부여는 비양극적 응분의 대우에 해당되며, 보상과 벌, 칭찬과 비난, 과실과 배상 등은 양극적 응분의 대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양극적 응분의 몫은 전통적으로 응보적 정의론(retributive justice)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비양극적 응분의 몫은 분배적 정의론(distributive justice)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P는 B 때문에 당연히 T를 가질만하다”는 언명은 P가 B를 보이면, 무조건 T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다. 100미터 달리기 세계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는 정식경기에서 마땅히 우승할 자격이 있다. 그러나 실제 경기에서는 그 선수가 우승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날의 컨디션이나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우승하지 못할 수도 있다. 마땅히

승리할 자격이 있다는 말이 실제로 승리한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마땅히 승리할 자격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정상적인 상황 혹은 방해요인이 없는 상황을 전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응분의 몫의 기본언명에는 ‘만약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혹은 특별한 방해요인이 작용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조건절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상적인 상황이나 부정적 방해요인의 부재를 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응분의 몫의 개념구조는 소극적인(negative) 성격을 갖는다(Goodin, 1985). 정상적 상황이나 방해요인의 부재가 의미하는 것은 첫째로, 응분의 몫에 대한 주장이 상위의 도덕체계나 제도와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응분의 몫에 대한 주장은 정당성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어떤 근거 B가 T를 가져올 확률이 확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확률적으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마땅히 ...할만하다’는 언명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셋째로, 필요(need)의 개입이 없어야 한다. 필요는 응분의 몫에 우선한다. 곧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치료받을 자격이 있고 없음을 따지기에 앞서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필요가 개입되는 상황에서는 응분의 몫의 기본언명이 실현되기 어려워진다.

이상의 의미해석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도덕체계 및 제도와 응분의 몫의 관계이다. 그것은 응분의 몫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근거는 ‘정당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Lamont, 1994). 그렇다면 응분의 몫 주장의 정당성은 어디에 있는가? 응분의 몫의 근거 자체에 있는 것인가? Feinberg가 제시한 숙성, 자격, 행동 등과 같은 근거들이나, Sher(1987)가 제시한 근면(diligence), 실적(merit), 수행성(performance), 덕성(virtue) 등과 같은 근거들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응분의 몫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응분의 몫의 근거들은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기준들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행동의 적합성이나 부적합성은 행동 자체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위의 사회적 가치나 규범체계에 비추어 평가되는 것이다. 이처럼 응분의 몫의 근거는 사회적 가치나 목적들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응분의 몫의 주장은 세 가지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Kleinig, 1971). 첫째는 사회의 가치나 규범체계에 의존해서 응분의 몫의 근거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 사람은 열심히 일했으니, 당연히 상을 받아야 한다”는 언명을 예로 들 수 있다. 둘째는 사회제도에 의존해서 응분의 몫의 근거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으니 당연히 감옥에 가야 한다”는 언명을 예로 들 수 있다. 셋째는 보다 특화된 규정에 따라 응분의 몫의 근거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적절한 대우의 크기와 관련된다. “그는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2년간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는 언명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보면, 응분의 몫의 개념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Sadurski, 1985: 117-118). 첫째, 응분의 몫은 사람 지향적(person-oriented)이다. 응분의 몫의 근거는 행동에 책임이 있는 구체적인 사람과 관계가 있다. 특히 응분의 몫은 행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여건을 제외하고, 통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한다.<sup>5)</sup> 둘째, 응분의 몫은 과거 지향적(past-oriented)이다. 응분의 몫은 그것의 근거에 대한 평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사후적인 성격을 갖는다. 미래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응분의 몫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미 수행한 행동에 대해 응분의 몫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응분의 몫은 미래의 바람직한 결과를 지향하는 공리주의적인 상벌의 개념과는 성격이 다르다.<sup>6)</sup> 셋째, 응분의 몫은 가치 지향적(value-oriented)이다. 응분의 몫은 어떤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응분의 몫의 근거와 응분의 몫에 대한 판단은 ‘평가적 태도(appraising attitude)’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Miller, 1976). 가령 상이나 보상은 존경, 칭찬, 감사와 같은 평가적 태도를 수반하는 것이다. 응분의 몫의 가치 지향적 특성은 필요에 의한 분배와의 비교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우리는 필요를 근거로 누군가에게 응분의 몫을 줄 수는 없다. 필요를 근거로 누군가를 평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응분의 몫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는 ‘비교(comparison)’의 문제이다.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노동 시간이 상이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임금을 주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동일한 경우는 동일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정의 관념에는 비교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응분의 몫의 근거에 따라 응분의 대우를 부여한다는 정의원리 관념에는 비교 개념이 포함되지 않는다(McLeod, 2003: 134). 전자의 입장에 따르면, 포도밭 주인의 비유는 정의롭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입장에 따르면, 계약에 따라 응분의 몫을 각자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것이다. 그런데 비교적 관점과 절대적 관점을 통합할 수 있는 상위의 원리

5) Feldman(1997)에 의하면, 자신의 통제력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응분의 몫은 얼마든지 판단 가능하다. 가령 어떤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식중독에 걸린 경우를 생각해보자. 식당주인은 부주의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응분의 몫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식중독에 걸린 사람은 응분의 몫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 Sadurski의 입장에 따르면, 식당주인의 경우는 책임과 관련하여 응분의 몫을 지불해야 하지만, 식중독에 걸린 사람의 경우는 책임과 무관하기 때문에 응분의 몫을 주장하기 어렵다. 그래서 Feldman은 응분의 몫의 판단대상을 당사자의 책임 유무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들의 책임 유무까지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6) Feldman(1997)에 의하면, 확정된 미래의 경우에 대한 응분의 몫도 고려할 수 있다. 가령 불치병으로 곧 죽음이 확실한 어린이의 경우, 복지재단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어린이를 위해 미리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응분의 몫을 과거에만 묶어둘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가 존재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응분의 몫의 개념에는 이러한 긴장이 항상 내재하고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응분의 몫과 개념적으로 유사하면서 다르기도 하고, 다르면서 유사하기도 개념들을 살펴보자. 첫째, 응분의 몫과 가장 유사한 개념은 ‘자격권리(entitlement)’ 개념이다. 보통 자격권리는 법적 혹은 유사법적인 규칙에 근거하여 분배가 결정된다. 따라서 자격권리에 대한 언명은 논쟁이 필요 없다. 그것은 맞거나 틀릴 뿐이다. 이에 반해서 응분의 몫은 가치판단과 도덕원칙에 근거한다. 따라서 응분의 몫에 관한 언명은 논쟁적이다. 응분의 몫의 판단은 맞거나 틀리는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이다(Sadurski, 1985: 119).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노인을 20년 동안 봉양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노인이 죽었다. 그런데 노인은 엄청난 재산을 숨겨놓고 있었다. 그런데 아들이 나타나서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다. 이 경우 자격권리 원칙에 따르면, 아들에게 재산권이 있다. 그러나 응분의 몫 원리에 따르면, 노인을 실질적으로 봉양한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의 재산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자는 명백하나, 후자는 논쟁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격권리와 응분의 몫이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령 제도나 특화된 규정에 따라 응분의 몫을 요구하는 경우는 자격권리와 중첩된다.

둘째, 응분의 몫과 유사한 개념은 공리주의적인 상벌 개념이다. 공리주의적인 상벌 개념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강화(reinforcement) 개념이다(Skinner, 1953; 임의영, 1993). 강화는 특정한 행동의 빈도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작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상을 주는 이유는 과거의 성과에 대해 응분의 몫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의 보다 나은 성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응분의 몫은 과거지향적인데 반해, 강화는 미래지향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응분의 몫과 강화 개념의 구분이 어려운 이유는 가시적인 분배 행위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즉,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임금을 주는 행위는 동일하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개념의 구별은 쉽지 않다.

#### IV. 쟁점들

응분의 몫은 많은 논쟁을 자극하는 개념이다. 특히 응분의 몫과 관련된 논쟁의 중심에 Rawls가 있다. 사실 Rawls가 응분의 몫을 주제로 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적은 논의가 논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sup>7)</sup> 이 장에서는 응분의 몫과 관련된 논점들을 Rawls의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 1.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것인가?

무엇보다도 응분의 몫이 정의원리로서 적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Rawls의 비판적 논변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것을 활용하여 이룩해낸 성과가 진정으로 그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보다 나은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그러한 자질과 그것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우월한 성품을 마땅히 가질만하다고 (deserve)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그가 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재능을 활용해서 보다 많은 이득을 마땅히 가질만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분명히 잘 못된 것이다. 사람들이 처음으로 사회의 구성원이 될 때 처하게 되는 여건에 대해 응분의 자격이 없는 것처럼, 천부적인 재능의 분배에서도 역시 그 누구도 자신의 처지에 대해 응분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심사숙고하여 내린 판단들 가운데 변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월한 성품에 대해 응분의 자격이 있다는 주장 역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의 성품은 자신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는 훌륭한 가정과 사회적 여건에 대부분 의존하기 때문이다. 응분의 몫(desert) 개념은 이러한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Rawls, 1971: 103-104).

인용에 따르면, 사람들의 천부적인 재능과 그러한 재능을 개발하기에 적합한 성품, 그리고 가족이나 지역공동체의 여건과 같은 것들은 단지 '주어진 것'이다. 개인은 그러한 조건들을 갖기 위해 스스로 노력을 한 것이 전혀 없다. 따라서 타고난 재능과 품성, 그리고 사회적 여건은 개인이 마땅히 가질 자격이 있는 응분의 몫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자의적인(arbitrary from a moral point of view, Rawls, 1971: 15, 311)'<sup>7)</sup> 천부적 재능과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서

7) 이러한 점에서 Kymlicka(2005: 77)의 지적은 흥미롭다. “그의 이론은 사람들에게 지배적인 동의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탁월한 것이 아니라, 후대 이론가들이 롤즈에 대한 반대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규정짓고 있다는 점에서 탁월한 것이다. 즉, 그들은 롤즈와의 대비를 통해 자신들의 이론적 입장을 설명한다. 따라서 롤즈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정의에 관한 후대 연구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8) 응분의 몫 개념을 옹호하고 있는 Sadurski(1985: 124)는 Rawls의 논지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천부적인 재능과 사회적 여건을 도덕적으로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도덕적으로 자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은 사회적 제도나 관행이 그러한 재능이나 여건을 다루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자연적 배분은 중립적이지만 그것의 사회적 사용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Sadurski의 주장은 Rawls의 논지를 반박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당화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자연적인 배분의 중립성이 사회적 제도의 자의성으로 인해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제도의 설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결론

사회적 가치의 불평등한 분배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응분의 몫은 정의로운 분배원리를 구성하는데 한계를 갖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Rawls의 논변은 개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통제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

Strawson(1994)은 응분의 몫의 근거라 할 수 있는 책임의 성립근거를 윤리학적으로 정리함으로써 Rawls의 논변을 보다 강화한다. 그는 이것을 윤리학의 근본논변(Basic Argument), 즉 ‘도덕적 책임의 불가능성 논변’으로 정리한다. 그 논변에 따르면, (i) 어떠한 것도 자기원인적인 것이 될 수 없다; (ii) 개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정으로 도덕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자기원인적인 존재—최소한 중요한 정신적 측면에서—가 되어야 할 것이다; (iii) 따라서 어떠한 것도 진정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질 수 없다. 사실상 응분의 몫의 개념이 충분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현대 정치철학의 심연에 흐르는 이러한 결정론적 입장 때문일 수도 있다(Miller, 1976). 그렇다면 개인의 행동은 결정론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인가? 물론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자유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인간과 동물을 비교해보면, 기본적으로 인간이나 동물은 욕구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응한다. 그러나 동물은 자연적 욕구를 수용하지만, 인간의 경우는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동물은 욕구에 대해 일차원적으로 반응하지만, 인간은 이차원적으로 반응한다(Frankfurt, 1971). 가령 인간은 생존의 욕구와 쾌락의 욕구가 경쟁하는 경우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과정에는 자유의지가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Rawls의 지적과 윤리학적 고민들은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들에게 개인의 통제가 가능한 영역과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찾아야 한다는 과제로 제시된다. 따라서 Dworkin(2002; 임의영, 2007)은 ‘여건에 둔감하고, 선택에 민감한 배분원리’를 정의원리로 제시한 바 있다. 통제가 불가능한 요소들이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무화시키고, 개인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분배는 인정하는 분배의 원리를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선택과정에 종종 생물학적 혹은 사회적 요소들이 개입하는 경우를 보면, 통제 가능한 영역과 통제 불가능한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보인다(Arneson, 1989). 이처럼 응분의 몫의 근거에 대한 논쟁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함의점을 찾기 어려운 기나긴 윤리학적 논쟁을 그 배경에 두고 있다.

---

은 바로 Rawls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인 것이다.

## 2. 응분의 몫의 근거는 제도적인 것인가 아니면 전제도적인(pre-institutional) 것인가?

Rawls의 입장은 응분의 몫에 따른 분배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자의적인 요소들을 무화시키는 사회제도의 설계와 그렇게 구성된 제도적 기획에 대한 기대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의론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소득과 부,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좋은 것들은 도덕적 응분의 몫(moral desert)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정의란 덕을 따름으로써 얻게 되는 행복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은 결코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그것은 적어도 하나의 명백한 원칙으로서 분배적 정의에 관한 적절한 관점이며, 사회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이러한 관점을 거부한다. 그러한 원칙은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되지 않을 것이다. 그 상황에서는 필요한 기준들을 규정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더욱이 덕에 따르는 분배관념은 도덕적 응분의 몫과 합당한 기대(legitimate expectations)를 구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개인들이나 집단들이 정의로운 체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공인된 규칙에 의해 규정된 바에 따라 서로에 대해 요구권을 갖는 것이 사실이다. 기존의 체제에서 권장되고 있는 다양한 것들을 행함으로써 그들은 어떤 권리들을 갖게 되고, 정의로운 분배의 몫은 이러한 권리 주장들을 반영한다. 정의로운 체제는 사람들이 가질 권리가 있는 것(entitle)에 대해 응답한다. 그것은 사회제도에 근거를 둔 그들의 합당한 기대를 충족시킨다. 그러나 그들이 가질 권리가 있는 것은 그들의 내적인 가치에 비례하거나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기본구조를 규제하고 개인들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정의 원칙은 도덕적 응분의 몫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분배의 몫이 그것에 상응하는 경우는 없다(Rawls, 1971: 310-311).

Rawls는 정의론의 핵심을 '사회의 주요제도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협동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분배를 결정하는 방식(1971: 7)', 즉 사회의 기본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분배의 몫은 사회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공적인 규칙의 형식으로서 정의로운 협동체제와 그것에 의해 형성된 기대들이 주어진다면, 자신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그 체제가 보상하기로 선언한 것을 수행한 사람들은 그들이 획득한 것들을 소유할 자격(entitlement)을 갖는 것이 옳다(1971: 103)." 제도가 요구하는 행동을 이행하고 그 결과로서 얻을 수 있는 몫에 대한 합당한 기대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응분의 몫과 제도에 의해 형성된 합당한 기대를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Rawls의 이러한 지적은 응분의 몫을 제도적인 차원에

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제도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촉발한다.

응분의 몫과 제도의 관계에 대한 입장은 몇 가지 경향으로 요약된다. 첫째, 응분의 몫의 근거는 제도를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에 의존한다는 입장이다. Feinberg(1970)는 응분의 몫을 공적 제도나 규칙에 선행하거나 독립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응분의 몫은 제도적인 규칙에 의해 설명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전제도적인 차원에서 응분의 몫을 보는 이러한 입장은 분배적 정의와 응보적 정의 모두에 해당된다. 둘째, 응분의 몫의 근거는 정의의 영역에 따라 제도적일수도 있으며, 전제도적일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Rawls(1971)는 분배적 정의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차원을 강조하고, 응분의 몫이 아니라 자격권리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그러나 응보적 정의는 전제도적인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셋째, 응분의 몫의 근거는 제도적 차원에서만이 규명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Scheffler(1992)는 응분의 몫을 제도적 설계를 위한 규범적인 토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제도의 산물로 이해한다. 즉, 제도를 전제하지 않고는 응분의 몫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넷째, 응분의 몫의 근거는 제도적 차원과 전제도적 차원 모두에서 설명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어떤 응분의 몫의 근거는 전제도적이며, 또 어떤 응분의 몫의 근거는 제도적이라는 중간적인 입장이다. Mcleod(1999)에 의하면, 제도적 차원에서 자격권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을 응분의 몫과 별개의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응분의 몫의 ‘근거’로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격권리는 단지 대상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인 반면, 응분의 몫은 대상의 ‘정도’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가령 유죄와 무죄는 자격권리에 해당되며, 형량은 응분의 몫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응분의 몫 개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제도적인 차원과 전제도적인 차원에서 그것의 해석 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반대하는 사람들은 제도적인 차원에 초점을 맞추고, 응분의 몫을 대신하는 자격권리 개념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 3. 응분의 몫은 응보적 정의에만 타당한 것인가? 분배적 정의에도 타당한 것인가?

Rawls는 응분의 몫은 분배적 정의 영역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개념으로 규정한다. 특히 제도를 초월하여 어떤 도덕적 가치가 응분의 몫을 결정하는 근거로 기능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요점은 도덕적 가치 개념은 분배적 정의의 제일 원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의원리나 자연적 의무 및 책임의 원리가 승인되기 이전까지는 그것이[도덕적 가치-필자] 도입될 수 없기 때문이

다. ... 도덕적 가치 개념은 권리와 정의 개념에 대해 부차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분배의 몫을 결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Rawls, 1971: 312-313).” 그러나 Rawls는 응보적 정의 영역에서는 응분의 몫 개념이 적절한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동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욱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행동을 저지르는 성향은 나쁜 품성(bad character)의 징표이다.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그러한 결점을 보이는 사람에게만 법적인 처벌이 주어질 것이다(315).” 여기에서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동을 저지르는 것은 개인의 ‘나쁜 품성’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법적인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는 논지를 전개한다. 나쁜 품성은 제도를 초월하는 도덕적 원인으로 제시된다. 이것은 분배적 정의와 응보적 정의의 차원이 상이함을 전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분배적 정의와 응보적 정의는 비대칭적인(asymmetrical) 것이라고 주장한다. “분명한 점은 경제적, 사회적 혜택의 분배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이 체계는 형법과 역(converse)의 관계에—공격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과 도덕적 가치에 대한 보상의 대비—있는 것이 아니다. ... 분배적 정의와 응보적 정의를 역의 관계로 생각하는 것은 완전한 오해이며, 존재하지도 않는 분배적 몫의 도덕적 근거를 암시하는 것이다(315).” Rawls는 응보적 정의에서는 제도초월적인 도덕적 가치를 응분의 몫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분배적 몫의 근거로는 적절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Rawls의 입장은 응보적 정의와 관련해서 전통적으로 논의되었던 응분의 몫 개념의 타당성은 인정하나, 그 개념이 분배적 정의의 영역까지 확대 해석되는 것의 무리함을 경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응분의 몫이 분배적 정의에는 무의미하고, 응보적 정의에는 유의미하다는 Rawls의 주장은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분배적 정의에서는 제도를 초월하는 도덕적 가치의 중요성을 부인하면서, 응보적 정의에서는 도덕적 가치를 전제하는 것이 정당해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Rawls가 자신의 논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인용한 Feinberg는 사실상 응분의 몫이 분배적 정의와 응보적 정의 모두에 유의미함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Rawls의 주장에 대해서 두 개의 입장이 나타나게 된다. 두 입장은 응보적 정의영역과 분배적 정의영역에서 응분의 몫 개념이 대칭성(symmetry)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나, 방향은 상이하다. 하나의 입장은 분배적 정의 영역에서 응분의 몫 개념이 제도적인 차원에서 논의된 것처럼, 응보적 정의 영역에서도 일관성 있게 응분의 몫 개념을 제도적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Sandel, 1982). 이렇게 되면, 응분의 몫 개념은 정의 논의 일반에서 무의미한 것이 되며, 자격권리 개념이 보다 중심적인 개념으로 부각된다. 다른 하나는 응보적 정의 영역에서 전제도적인 가치를 인정한 것

처럼, 분배적 정의 영역에서도 일관성 있게 전제도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Morarity, 2003). 이렇게 되면, 응분의 몫 개념은 정의의 기본 원리로서 의미를 갖게 된다.

#### 4. 응분의 몫은 평등(equality)과 양립가능한가 아니면 불가능한가?

응분의 몫에 대한 Rawls의 비판적 논의는 본질적으로 그것이 평등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응분의 몫에 따라 분배의 몫을 결정하게 되면, 당연히 불평등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응분의 몫의 논리에 따르면, 그러한 불평등은 행위 당사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Rawls의 비판의 초점은 행위 당사자의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물을 수 있느냐 하는데 맞춰지고 있다. 당사자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의 근거가 미약할수록 책임에 근거한 불평등의 정당성 역시 약화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응분의 몫은 평등의 이념과 양립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은 기본적으로 평등 이념이 응분의 몫에 우선해야 한다는 규범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응분의 몫이 평등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적합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같은 것은 동일하게, 같지 않은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평등이념의 근간이 되는 것인데, 응분의 몫은 이러한 처우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불평등한 분배의 문제는 불평등성 자체가 아니라 불평등의 타당성(deservingness)이라는 것이다(Pojman, 1997).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응분의 몫이 평등 이념에 우선한다.

## V. 응분의 몫과 형평성, 그리고 행정적 함의

지금까지 응분의 몫 개념을 정의의 관념의 근간으로서 그리고 다른 정의 원리들과 경쟁하는 하나의 정의원리로서 정리하였으며, 그 개념을 둘러싼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응분의 몫이 사회적 형평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행정에 대해 갖는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 1. 사회적 형평성과 응분의 몫

사회적 형평성은 추상적 원칙이 구체적인 현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조절이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절이념으로서 사회적 형평성이 응분의 몫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그 관계는 정의 관념의 근간으로서 응분



의 몫 개념과 정의원리로서 응분의 몫 개념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정의 개념의 근간으로서 응분의 몫 개념이 형평성과 갖는 관계를 살펴보자. 정의 개념의 근간으로서 응분의 몫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몫’을 갖게 하는 것이라는 추상적 의미를 갖는다. 분배의 몫은 ‘동일한 경우는 동일하게, 다른 경우는 다르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의 개념의 근간으로서 응분의 몫 개념은 동일한 경우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를 판별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현실의 다양성 속에서 동일한 경우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를 판별함으로써 추상적 원칙을 적용하는데 ‘유연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응분의 몫 개념은 조절이념인 사회적 형평성 개념과 일치하는 면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정의원리로서 응분의 몫이 형평성과 갖는 관계를 살펴보자. 정의원리로서 응분의 몫 개념은 행위나 속성을 근거로 그것에 적합한 대우를 하는 것이다. 핵심은 근거와 대우의 적합성 문제이다. 그 적합성(fittingness, Cupit, 1996)이 바로 사회적 형평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그렇다면 정의원리로서 응분의 몫이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충분한 것인지를 검토해보자.

첫째, 일반적으로 응분의 몫의 ‘근거’를 행위나 속성에서 찾는다. 이 경우 응분의 몫의 근거가 과연 ‘진정한’ 근거로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타고난 재능이나 집안의 배경 때문에 더 나은 행동과 속성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자기 몫을 요구하기 위한 근거로서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사실상 정의원리로서 응분의 몫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영역의 경계를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애초부터 통제불가능의 영역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나의 영역만을 전제하는 것은 형평성의 실현을 또 다시 어렵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응분의 몫의 원리가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통제가능한 영역과 통제불가능한 영역을 판별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다. 그런데 과학적 계산에 의해 영역들 간의 경계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영역들에 대한 일반적인 구분의 논리를 반영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통제가능성의 영역이 사회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역의 경계에 대한 문제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찾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경계는 사안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논쟁이나 제도적 절차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응분의 몫 이론은 이처럼 경계를 찾을 수 있는 이론적 장치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의원리로서 응분의 몫의 근거는 가시적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결과적인 행동만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도와 행동을 함께 고려하는 응분의 몫 개념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응분의 몫 원리는 논쟁적이다. 논쟁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행동의 동기, 의도, 이유, 목적 등과 같은 주관적 의미(subjective meaning)를 파악하고 그것을 행동의 결과와 대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응분의 몫 개념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기 위해서는 주관적 의미의 탐구에 있어서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상학적 방법이나 해석학적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셋째, 정의원리로서 응분의 몫의 근거의 정당성은 제도를 초월하기도 한다. 제도화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규범화된 가치들이 정당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규범은 동등한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있는 다양한 개인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보다 강한 사회적 권력을 향유하는 집단이 선호하는 가치들이 사회적으로 규범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응분의 몫의 근거를 정당화하는 사회적 가치규범이 특정집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이러한 논변이 타당하다면, 응분의 몫의 근거는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의원리로서 응분의 몫의 개념화과정에는 응분의 몫의 근거를 정당화하는 사회구조적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장치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응분의 몫의 근거는 다양하다. 그것은 근거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응분의 몫의 근거로서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노력과 성취의 경우를 보자. 많은 노력이 높은 성취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노력을 했지만 성취도가 낮아 적은 몫을 갖게 되고, 적은 노력으로도 성취도가 높아 많은 몫을 갖게 된다면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은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정의원리로서 응분의 몫이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근거들이 갈등하는 경우에 대한 체계적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민들이 충분히 반영된다면 ‘동등한 자유를 가진 개인들이 합당한 불평등’을 인정하는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일반적인 정의 관념의 근간으로서 응분의 몫은 사회적 형평성 개념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의원리로서 응분의 몫은 사회적 형평성을 주장하는 ‘하나의’ 원리로서 의미를 갖지만, 이론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

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유의미한 것은 응분의 몫 개념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논쟁의 내용들은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고민의 주제들 대부분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 2. 응분의 몫의 행정적 함의

응분의 몫이 행정적으로 갖는 의미 역시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일반적인 정의 관념의 근간으로서 응분의 몫 개념은 행정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정의관을 구성하는데 기본 관념으로서 수용될 수 있다. 국민 일반이 ‘제 몫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정신과 국민 일반을 ‘같은 경우는 같게, 다른 경우는 다르게 대우하는’ 정신은 행정의 정의관을 구성하는 중심 내용이 될 수 있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원칙은 합당한 평등의 원칙을, 그리고 다른 경우는 다르게 대우하라는 원칙은 합당한 불평등의 원칙을 의미한다. 합당한 평등의 원칙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명권, 재산권, 자유권 등 기본권을 동등하게 갖는다. 평등은 기본권의 도덕적 전제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들은 모든 국민에게 기계적으로 동등하게 부여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처해있는 상황이 사람들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황은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적어도 정부는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기능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응분의 몫 개념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처하게 되는 불이익을 보상할 것을 촉구한다. 따라서 여건에 따른 차이를 보완해주는 차별적 대우는 합당한 불평등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응분의 몫 개념은 개인의 선택에 의한 불평등은 개인이 책임을 지게 하는 원리를 정책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지지한다.

다음으로는 정의원리로서 응분의 몫이 행정에 대해 갖는 의미를 살펴보자. 행정이론 안에서 응분의 몫 개념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경우를 발견할 수는 없지만 매우 친숙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소하게 보이는 이유는 접근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행정이론들은 주로 사회심리학적인 접근방법에 의존하여 응분의 몫 관념을 표현하고 있다. 가령 사람들이 조직에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를 결정하는 논리를 설명하기 위한 Simon의 ‘공헌-유인이론’은 응분의 몫의 핵심관념을 달리 표현한 것이다. 또한 다양한 욕구에 적합한 유인의 종류를 찾거나, 유인을 제공하는 방법을 찾는 동기이론, 그리고 행동수정을 추구하는 강화이론 역시 응분의 몫에 대한 사회심리학적인 설명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채용에서 응시자격과 시험, 근무평가, 보수 및 승진, 징계, 퇴직 등 일련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이론은 응분의 몫 관념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행정이론은

이미 응분의 몫 개념을 의식하지는 않았지만, 응분의 몫을 판단하고 제공하는 방법을 매우 정교하게 이론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응분의 몫은 행정이론과 친화력이 매우 큰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그러한 개념을 보다 의식적으로 이론화하는 노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정의원리로서 응분의 몫 개념이 행정에 대해 갖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자극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다룬 응분의 몫과 관련된 쟁점들은 사실상 행정실무에서 실질적으로 응분의 몫을 결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문제들 대부분을 예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응분의 몫은 주체, 근거, 대우 등 세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세 가지 차원에서 응분의 몫을 판단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문제들을 살펴보자.

첫째, 응분의 몫의 주체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자. 주체는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하나의 기준은 인간과 비인간(동물, 장소, 식물, 문화재 등등)이다. 인간은 당연히 주체가 될 수 있지만, 과연 비인간을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이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상처 입은 독수리를 구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위기의 순간에 사람의 생명을 구한 개에게 포상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 역시 제기될 수 있다. 문화재,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호의 타당성과 보호를 위한 노력의 정도 문제는 가장 대표적인 논쟁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인간의 경우 주체를 개인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집단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경우 조직이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경우, 그것의 주체가 개인인가 아니면 집단인가 하는 문제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평가의 편리성 때문에 주로 개인을 주체로 보는 경향이 일반적이지만, 조직의 작업이 일종의 팀플레이라는 점에서 어느 개인만을 주체로 상정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경우는 어느 정도가 개인의 책임이고 집단의 책임인지 적절한 비중을 부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다른 하나의 주체분류는 정부 간 관계나 정부와 민간간의 관계에서 제시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과 관련해서는 위탁기관과 피위탁기관이 그것이다. 공공정책이나 공공사무가 법률적으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조직의 각 심급 간의 협조를 전제로 하는 정책과 사무가 적지 않다. 그러한 경우 정책이나 사무의 중첩성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책임의 비중을 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체로서 업무에 따라 구성된 부처들을 들 수 있다. 부처별로 업무를 명확히 분류하여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정책과제를 대부분은 여러 부처들의 업무들과 중첩되어 있다. 이 경우 역시 책임의 주체와 주체별 책임의

정도를 판별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책임과 의무 및 혜택과 부담의 주체 문제는 다차원적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할 때, 행정은 형평성을 이루는데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응분의 몫의 근거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자. 먼저 행정조직관리의 차원에서 보면, 조직 안에서 응분의 몫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들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문제는 다양한 기준들 가운데 어떤 기준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과 기준들을 함께 적용하는 경우 상대적 비중을 어떻게 부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또한 근거문제는 주체문제와도 연결된다. 조직 안에서 개인들이 함께 일을 했어도 개개인마다 공헌의 정도는 다를 수 있다. 응분의 몫의 근거로서 공헌의 정도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역시 문제이다. 대표적으로 조직에서 응분의 몫의 근거는 노력과 성취이다. 노력은 개인적으로 통제 가능한 부분이 크지만, 성취여부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조직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노력의 정도를 실질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성취는 상대적으로 측정이 용이하고 조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조직에서는 노력보다는 성취가 응분의 몫의 근거로서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사실상 노력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공정해 보이지만, 노력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성취는 실제로 측정이 가능하지만, 공정성이 낮다는데 문제가 있다(Wolff, 2003).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경쟁하는 근거들을 비교하거나 상대적인 비중을 부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정책적 차원에서는 주체로서 국민들이 처해있는 여건이 응분의 몫의 근거가 된다. 가령 생물학적 차원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신체적 문제나 정신적 문제들이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자연적 차원에서는 자연적 재해와 같은 현상을 근거로 들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구조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발생한 사태로서 구조적 실업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정책적 이유로 정부의 권력 남용이나 실패한 정책으로 인해 불우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렇게 다양한 차원에서 국가가 응분의 몫을 분배하는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이렇게 다양한 차원의 근거들이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근거들이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보다는 중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응분의 몫을 계산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히 다양한 근거들이 상호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대우의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먼저 행정조직관리의 차원에서는 경제적 욕구나 사회심리적 욕구를 근거로 대우를 위한 가치(goods)와 부담이 결정된다. 가령 보수는 경제적 욕구에 근거하는 것이며, 승

진은 사회심리적 욕구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욕구에 대한 정보는 대우를 위한 가치를 판단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문제는 조직의 구성원들은 동일한 측면이 있으면서도 또한 다양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인들의 욕구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조직이 획일적으로 제공하는 가치들은 개인들의 욕구구조가 갖는 동일성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욕구구조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관리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가치를 다양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정책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가치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응분의 몫은 복지나 보상의 문제와 관련된다. 복지의 차원에서는 가령 현금이나 시설 혹은 서비스와 같은 형태로 응분의 몫을 분배할 수 있다. 그런데 복지차원에서 응분의 대우를 위한 가치를 결정하고 분배하는데 있어서 고민해야 할 문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그러한 가치가 분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불우한 처지를 보완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들을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배분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 일반에게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고려할 가치가 있다. 응분의 몫이 과거지향적인 성격을 갖지만, 국민은 누구나 불우한 처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일반에게 응분의 몫을 배분하는 논리를 정당화하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Feldman, 1997). 보상의 경우 역시 현금이나 현물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아니면 개발이익과 같은 미래의 가치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대우의 문제는 행정관리적 차원에서는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그리고 정책적 차원에서는 국민들의 다양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핵심적이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는 응분의 몫 이론에서 간과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응분의 몫을 구성하는 주체, 근거, 대우의 결정논리가 규범적으로 주어져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조직 활동에서는 조직 참여자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조직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 정치적 권력관계나 상징 활용의 정치 논리 등에 의해 응분의 몫을 구성하는 주체, 근거, 대우가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응분의 몫을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 메커니즘에 보다 친숙해질 필요가 있으며,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VI. 결론

응분의 몫은 행정의 사회적 형평성 이념을 보다 보편적으로 이론화하는데 매우 유용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정의 관념의 근간으로서 응분의 몫은

행정에 대해 정의감을 자극하며, 정의원리로서 응분의 몫은 행정에서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제 몫을 갖게 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두 가지 측면의 응분의 몫 개념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사회적 형평성이념은 두 측면을 동시에 내포한다. 응분의 몫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얻게 되는 시사점은 무엇보다도 심리학이나 경제학과는 달리 그동안 생소하게만 보였던 정치철학 역시 구체적인 행정이론 개발의 기초로서 활용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갖는 의미는 단지 기술적인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인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게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응분의 몫은 공적인 토론과 논쟁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사회적 형평성은 공적 토론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적 토론과 논쟁이 적절하게 제도화된 사회에서는 응분의 몫 관념이 건강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제 몫'과 '남의 몫'을 구분하는 기준의 타당성은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셋째, 응분의 몫과 관련된 쟁점들은 정의론 분야에서 고민하는 대부분의 문제를 망라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형평성의 개념적 내연을 심화하고 외연을 확대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임의영. (1993). 『스키너의 행동주의적 인간관』. 서울: 문학과지성사.
- 임의영. (1994). 신행정학의 규범적 가치로서 사회적 형평성: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기초한 정치철학적 비판. 『한국행정학보』, 28(4): 1157-1174.
- 임의영. (2003). 사회적 형평성의 개념적 심화를 위한 정의론의 비교연구: Rawls에 대한 Nozick, Walzer, Young의 비판적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4(2): 47-64.
- 임의영. (2007). 사회적 형평성의 정의론적 논거 모색: R. Dworkin의 '자원평등론'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5(3): 1-21.
- 차하순. (1983). 『형평의 연구: 17·18세기 유럽정치사상을 중심으로』. 서울: 일조각.
- Adkins, A. W. H. (1960). *Merit and Responsibility: A Study of in Greek Valu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ristotle. (1932). *Aristotle Politics*. trans. by H. Rackham.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Aristotle. (1953). *The Nichomachean Ethics of Aristotle*. trans. & int. by D. Ros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Arneson, R. J. (1989). Equality and Equal Opportunity For Welfare, *Philosophical*

- Studies*, 56: 77-93.
- Campbell, T. D. (1974). Humanity before Justic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 1-16.
- Cupit, G. (1996). *Justice as fittingness*. Oxford: Clarendon Pres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workin, R. (2002). *Sovereign Virtue: The Theory and Practice of Equality*. Cambridge, Massachusetts, London, England: Harvard University Press.
- Feinberg, Joel. (1970). *Doing & Deserving: Essays In the Theory of Responsibility*.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Chp.4 Justice and Personal Desert).
- Feldman, Fred. (1997). *Utilitarianism, Hedonism, and Desert: Essays in Moral Philoso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Chp.9 Desert: Reconsideration of Some Received Wisdom).
- Frankfurt, H. (1971). Freedom of the Will and the Concept of a Person, *Journal of Philosophy*, 68(1).
- Frederickson, G. (1980). *New Public Administration*. Alabama: University of Alabama Press.
- Goodin, Robert E. (1985). Negating Positive Desert Claims, *Political Theory*, 13(4): 575-598.
- Harmon, M. (1974). Social Equity and Organizational Man: Motivation and Organizational Democrac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4(1): 11-18.
- Hart, D. K. (1974). Social Equity, Justice and Equitable Administrator,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4(1): 3-11.
- Hobbes, T. (1968). *Leviathan*. ed. by C.B. Macpherson. Penguin Books.
- Höffe, O. (2001). 『정의 *Gerechtigkeit*: 인류의 가장 소중한 유산』, 박종대 역. 서울: 이제이북스.
- Hospers, J. (1961). *Human Conduct: An Introduction to the Problems of Ethics*.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 Kleinig, John. (1971). The Concept of Desert,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8(1): 71-78.
- Kymlicka, W. (2005). 『현대정치철학의 이해: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공동체주의, 시민권이론, 다문화주의, 페미니즘』, 장동진 외(역). 서울: 동명사; *Contemporary Political Theory*. Oxford Clarendon Press, 1990.
- Lamont, Julian. (1994). The Concept of Desert in Distributive Justice, *Philosophical Quarterly*, 44(174): 45-64.



- Marx, K. (1967). *Writings of the Young Marx on Philosophy and Society*, ed. & trans. by Easton, L.D. & Guddat, K.H. New York: Anchor Books.
- McLeod, O. (1999). Desert and Institutions. in Pojman & McLeod(ed.), *What Do We Deserve? A Reader on Justice and Desert*, 186-195.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McLeod, O. (2003). On the Comparative Element of Justice. in Olsaretti(ed.), *Desert and Justice*, 123-144. Oxford: Clarendon Press, 2003.
- Mill, J. S. (1951). *Utilitarianism, Liberty, and Representative Government*. New York: E.P. Dutton and Company. Inc./ London: J. M. Dent and Sons, Limited.
- Miller, David. (1976). *Social Justice*. Oxford University Press.
- Moriarty, J. (2003). Against the Asymmetry of Desert, *NOÛS*, 37(3): 518-536.
- Nozick, R. (1974). *Anarchy, State, and Utopia*. New York: Basic Book, Inc., Publishers.
- Olsaretti, S. (2003). Introduction: Debating Desert and Justice. in Olsaretti(ed.), *Desert and Justice*, 1-24. Oxford: Clarendon Press, 2003.
- Olsaretti, S. (2003, ed.), *Desert and Justice*. Oxford: Clarendon Press.
- Perelman, Ch. (1963). *The Idea of Justice and the Problem of Argument*.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New York: The Humanities Press.
- Platon. (1997). 『국가·정치』, 박종현 역주. 서울: 서광사.
- Pojman, L. P. & McLeod, O. (1999, ed.), *What Do We Deserve? A Reader on Justice and Desert*.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Pojman, L. P. (1997). Equality and Desert, *Philosophy*, 72.
- Pojman, Louis P. & McLeod, Owen. (1999). Contemporary Interpretations of Desert. in Pojman & McLeod(ed.), *What Do We Deserve? A Reader on Justice and Desert*, 61-69.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Rawls, J. (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achusett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Sadurski, Wojciech. (1985). *Giving Desert Its Due: Social Justice and Legal Theory*. Dordrecht, Boston, Lancaster: D. Riedel Publishing Company. 117-118.
- Sandel, M. (1982).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effler, S. (1992). Responsibility, Reactive Attitudes, and Liberalism in Philosophy and Politics,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21(4): 299-323 or in

- Scheffler(2001, ed.), *Boundaries and Allegiances: Problems of Justice and Responsibility in Liberal Thought*, 12-31.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her, G. (1987). *Desert*.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kinner, B. F. (1953). *Science and Human Behavior*. New York : Macmillan.
- Smith, A. (1976).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ed. by D.D. Raphael & A.L. Macfie. Oxford: Clarendon Press.
- Sterba, J. P. (1986). Recent Work on Alternative Conceptions of Justice,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23.
- Strawson, G. (1994). The Impossibility of Moral Responsibility, *Philosophical Studies*, 75.
- Walzer, M. (1983). *Spheres of Justice: A Defence of Pluralism and Equality*. New York: Basic Book, Inc., Publishers.
- Wolff, J. (2003). Dilemma of Desert. in Olsaretti(ed.), *Desert and Justice*, 219-232. Oxford: Clarendon Press, 2003.
- Young, M. (1958). *The Rise of the Meritocracy 1870-2033*. Baltimore, Maryland: Penguin Books.

## Abstract

# A Study on the Justice-Theoretical Basis of Social Equity: A Focus on Desert

Euyyoung Lim

Social equity is a central idea of public administration that civil servants must pursue. In spite of its importance, there are few studies on that concept. At most, there was a study on social equity based on Rawls' theory of justice by new public administration theorists. Social equity is an adjusting idea that makes arrangements and applies various principles of justice flexibly in a variety of concrete situations. Therefore, in order to refine the theory of social equity, it is desirable to consider various theories of justice. This article intends to expand the theoretical horizon of social equity. For this aim, this article focuses on the concept of 'desert,' which has provoked a number of disputes in the political philosophy of liberal egalitarianism. In this article, desert is treated in two aspects. On the one hand, desert is treated as the root of the general notion of justice. On the other hand, it is treated as a principle of justice that competes with other principles of justice. Desert is not a definite concept with a shared definition that justice theorists agree on. So this article examines some points of controversy. Finally,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desert in the light of social equity, and suggests the significance of desert to public administration.

**【Key words: social equity, desert, justice, idea of public administration】**